

2026년도  
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 
신규과제 공모 안내

2026

보 건 복 지 부  
국 립 암 센 터  
암정복추진기획단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사업개요 .....              | 01 |
| II. 신규지원 계획 .....          | 02 |
| III. 신청요건 및 방법 .....       | 03 |
| ① 신청요건 .....               | 03 |
| ② 신청방법 .....               | 06 |
| ③ 유의사항 .....               | 08 |
| IV. 평가 및 관리 .....          | 12 |
| ① 선정평가 .....               | 12 |
| ② 향후 연구사업 관리 .....         | 15 |
| ③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.....     | 17 |
| ④ 연구성과 및 보안관리 .....        | 18 |
| ⑤ 기술료 제도 안내 .....          | 20 |
| ⑥ 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 기타 ..... | 22 |
| <br>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[붙임] 제안요청서(RFP) .....      | 23 |

# 사업개요

## 1]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개요

### 1) 사업목적 및 근거

#### ○ 사업목적

- 국가 암관리 정책·사업 및 암 예방·진료 기술 개선을 위한 근거 창출

#### ○ 법적근거

- 암관리법 제9조

#### ○ 관리·운영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R&D 통합규정
-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규정 제7조(보건복지부고시)
-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(보건복지부, 보건산업진흥원)

### 2) 비전 및 추진전략

#### 비전 및 목표

비전

세계 최고 수준의 암관리 및 진료서비스 제공 국가

목표

국가 암관리 정책·사업 및 암 예방·진료 기술 개선을 위한 근거 창출

#### 중점 추진방향

##### 국가암관리사업 개선방안 제시

- 국가암관리사업의 근거 확보 및 적용
- unmet needs 반영한 암 공중보건연구
- 지역암센터 연구사업 지원

##### 신치료 및 표준치료법 제시

- 암진단·치료기술 개선 등 연구자주도  
공익적 암 임상연구
- 임상연구 생태계 조성
- 기술활용 융합연구

##### 암연구 기획 강화

- 국가 암 연구의 네비게이터
- 국립암센터 내외부 연구를 연계하는  
전략적 암 연구 기획

## 1] 공모과제 개요

| 프로그램            | 지원 분야   | 연구주제   | 지원 규모           | 비고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. 암관리 근거 창출 연구 | 암 예방·관리연구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-1. 국가 암관리 종합계획상의 주요 추진전략 관련 근거 마련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| 1.5억원 이내, 2년 이내 | RFP 1-1 |
|                 |   | 1-2. 국가암관리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RFP 1-2 |
|                 |   | 1-3. 지속 가능한 소아청소년암 진료 및 생존자 지원체계 고도화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RFP 1-3 |
|                 |   | 1-4.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현황 분석과 국제 동향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체계 마련 연구 |                 | FPF 1-4 |
| 2. 공익적 암 임상연구   | 한국형 암 임상연구 네트워크 (Korea Clinical Oncology Network) |  | 5억원 이내, 5년 이내   | RFP 2   |

※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제안요청서 참조

※ 1차년도('26는 연구개발기간(9개월)을 고려하여 연간 연구개발비의 3/4 이내 지원

## 2] 추진 일정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25 12. 29 (월)              | 사업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2026 01. 27 (화) 12:00</b> | <b>과제 신청(연구책임자 전산입력) 마감</b> |
| <b>2026 01. 27 (화) 14:00</b> | <b>기관 전자인증(기관담당자) 마감</b>    |
| 2026. 2월 중                   |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               |
| 2026. 3월 중                   | 기획단 심의 및 예비선정과제 공고          |
| 2026. 3월 중                   | 최종 선정과제 승인 및 수정계획서 접수       |
| 2026. 4. 1.                  |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              |

※ 세부 일정 및 연구 시작일은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1 신청요건

### 1) 연구기관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-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5조제2항과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\*)

\*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원 제외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
-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

※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(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)

## 2) 연구책임자 자격

- 프로그램별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
- 비정규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,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용 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,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'임용확약서류'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연구책임자 자격에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/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

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
## 3) 과제구성 요건

- 제안요청서(RFP)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할 수 있으며, 단독과제가 아닌 경우 각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(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)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주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(연구개발계획서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대표로 작성)
-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주관·공동·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, 위탁과제는 주관연구개발과제만 구성할 수 있음
  -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하며, 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함
  - \*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이 있는 과제의 경우,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과제 전체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 4) 신청 및 수행 제한

- (신청제한)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의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- (수행제한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에 따른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
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
- 다만, 동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

※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사전검토를 실시하므로,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요망

○ (신청제한) 연구책임자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이미 수행 중인 연구자

- 다만,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예외로 함

- 기반 연구의 경우 필요시 사전 검토 및 복지부 승인을 통해 진행

○ (신청제한) 연구책임자로 국립암센터 소속인 연구자

- 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국립암센터 소속 연구책임자 지정불가

\* 단,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가능

○ (신청제한)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신청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※ 모든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해 참여제한 및 중복 여부를 확인하며, 필요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

## ② 신청방법

### 1)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

#### ○ 공고 및 접수처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

#### ○ 신청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

#### 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므로 사전 준비 必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 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####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정보 등록 필수

\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\*\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- ※ ① 및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 제외)
- 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#### 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#### 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- 과제 접수 매뉴얼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 로그인 → 'R&D업무포털' 클릭 및 접속 → 'R&D고객센터'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전체 매뉴얼 다운로드

※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
## 2)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

- 신청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(2024.2.29. 개정)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함
- 간접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114조(간접비고시비율 산출)에 따라 산출하며, 총연구개발비에 포함됨

## 3)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%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
- 위탁정산수수료와 관련한 사항(수수료율 등)은 최종 선정 시 안내함

## 4)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분량 및 기한

- 분량 제한은 주관연구개발기관(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분량 포함) 기준으로 연구내용 중심 50페이지 이내로 적용하며,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항목별 분량 제한사항도 필수 준수 요망
  - 전산입력(접수)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
  - **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**되며,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 접수대상에서 제외됨
  -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(마감 2일전부터) 전산 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

### 3) 유의사항

#### 1) 예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

-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시 단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시점,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개발성과(논문게재, 특허 출원 및 등록, 사업화 등)를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
-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

#### 2)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| 연구개발기관유형  | 연구개발비 비율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(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)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(그 외 기관 지원 포함) |   |
| 비영리기관   | 100% 이하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소기업  | 75% 이하  | 25% 이상                   | 10%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견기업  | 70% 이하  | 30% 이상                   | 13%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기업·대기업   | 50% 이하  | 50% 이상                   | 15%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(비영리·영리기관 공통 적용)  | 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<br>나. 연구시설·장비비<br>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$\text{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} = \frac{\text{기관부담 연구개발비}}{(\text{해당 연구개발기관})\text{정부지원 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 연구개발비}} \times 100$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
※ 세부내용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9조 및 별표1 참조
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

#### 3) 연구시설·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심의 요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'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함
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·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고,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에서 심의함

※ 자세한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 참조

#### 4)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  - 각 소속기관(대학 등)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해야 함
    - IRB 심의결과 제출·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(IRB 포함)에서 담당
  -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기관의 IRB 설치 및 등록 의무화
    - IRB 설치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IRB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
- ※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의 문의사항이나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(<http://irb.or.kr>, [irb@nibp.kr](mailto:irb@nibp.kr))로 문의

#### 5)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·보고·공개

-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
  -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개발성과관리·유통 전담기관 운영
    - ※ 관련규정 : 「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」
  - 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,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의 담당 부서와 사전확인 후, 자원 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·기탁하여야 함
  - 다만, 논문, 특허, 보고서원문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에 직접 등록하지 않고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에 등록

**<연구개발성과의 등록·기탁 대상 및 범위>**

| 구분    | 대상             | 범위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1. 등록 | 가. 논문          |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(대회)지에 수록된 학술논문(전자원문을 포함한다)   |
|       | 나. 특허          |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  |
|       | 다. 보고서원문       | 연구개발 연차보고서,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  |
|       | 라. 연구시설·장비     |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(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)의 연구시설·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·장비  |
|       | 마. 기술요약정보      | 연차보고,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  |
|       | 바.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| 서열·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, 서열·구조·상호작용 등 단백질체정보, 유전자(DNA)칩·단백질칩 등 발현체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 |
|       | 사. 소프트웨어       |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  |
|       | 아. 표준          |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,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[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(ISO, IEC, ITU)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] |
| 2. 기탁 | 가.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| 세균, 곰팡이,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,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·수정란 등 동물자원, 식물세포·종자 등 식물자원, DNA, RNA,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나. 화합물         |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 |
|       | 다. 신제품         |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제품 및 관련 정보   |

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[별표4]

○ 임상연구정보 CRIS 등록

- 등록대상 :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는 코호트 등의 관찰연구 및 중재연구(임상시험)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
-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서비스(CRIS, <http://cris.nih.go.kr>)에 지원과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

※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(CRIS) 등록문의 : 043-249-3085

- 성과보고 시 임상연구 성과는 CRIS 등록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

- 임상연구정보서비스(CRIS,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)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에 대한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, 운영하고 있음
- 2010년 5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(ICTRP)에 국가대표등록시스템(Primary Registry)으로 가입함에 따라, CRIS등록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본인의 연구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국제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등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

※ 정보등록 시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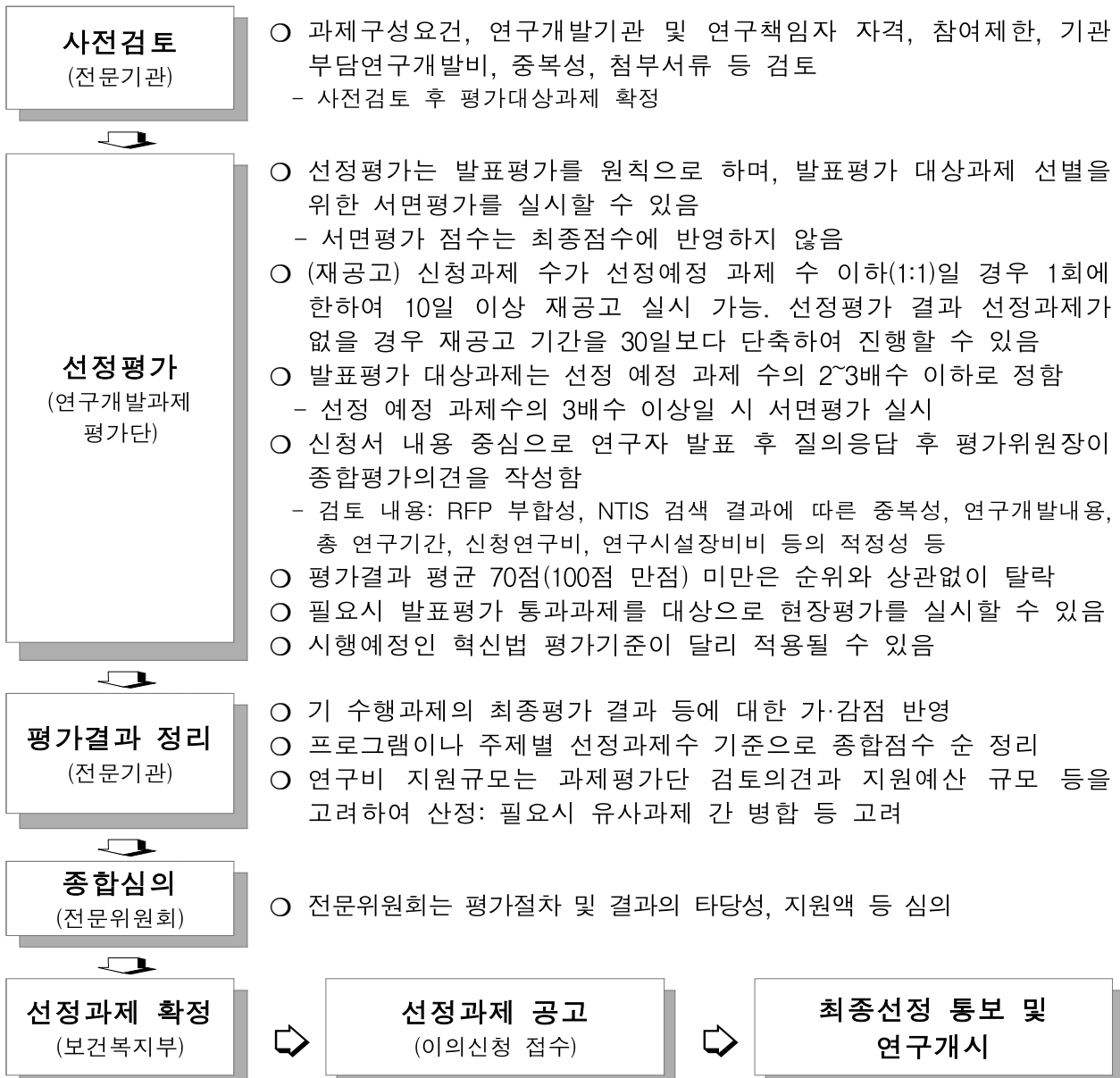
- 등록시점: 첫 피험자 모집 전에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도 등록이 가능
- 등록권한: 회원가입 후, 등록권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 가능
- 임상연구정보 갱신: 임상연구를 등록한 사용자는 등록된 연구의 종료 시점까지 매 6개월마다 연구정보를 갱신하여야 함

## 1 선정평가

### 1) 개요

-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, 학술·기술·사회·경제·지역적 파급효과, 수행 계획의 충실성,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,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

### 2) 평가 및 선정절차



### 3) 평가항목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연구의 부합성            | ·연구제안서(RFP)와의 부합성             | 20점  |
| 연구목표의 타당성          | ·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등   | 20점  |
| 연구계획의 우수성          | ·연구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여부            | 10점  |
|                    | ·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 | 10점  |
| 연구기간, 연구개발비 등의 적절성 | ·연구기간 및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절성, 연구개발 역량 | 20점  |
| 기대효과 등             | ·연구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              | 20점  |
| 합계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점 |

### 4) 평가방법

#### ○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

- 연구개발과제가 선정예정과제수의 3배수 이상으로 접수되거나 발표평가에 앞서 선별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때 서면 평가 점수는 최종점수에 반영하지 않음

※ 서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최종선정 예정과제수가 1개일 경우 3배수로, 2개 이상일 경우 2배수 이하로 발표평가 대상과제수를 정함

### 5) 가·감점 부여

#### ○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및 「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」에 따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(지역암센터 우대 가점 등)

#### ○ 최종평가 결과 반영

-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기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, 기 수행과제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가·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(1회에 한하여 적용)

※ 적용기준: 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규정」 별표1에 따름. 단, RFP에 명시된 경우 한해 적용

## 6) 평가점수 산정

-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(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)하여 과제의 종합평가점수 및 연구개발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
  - ※ 다만,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,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
-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, 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」 내 ‘동점자 처리기준’을 준용함

## 7) 이의 신청 및 중복성 처리 기준

- 이의신청 및 중복성이 제기된 과제는 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」에 따라 처리
- **(이의신청)** 평가결과(의견)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」의 이의신청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\*,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우선 조사·검토하고,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실시함
  - ※ 다만, 평가위원 선정, 연구개발비 결정, 평가규정 절차, 평가방식 (상대·절대·혼합·서면·발표(토론)·블라인드, 평가단계 등)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
- **(중복성)** NTIS 검토결과, 주관연구책임자의 소명자료, 과제평가단 및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함
  - 연구자는 IRIS를 통해 과제 접수 시 차별성 검토 관련 항목\* 입력 후 차별성 검토 필수 진행
  - \* 연구개발과제명(국문), 핵심어(국문, 영문), 최종목표내용, 연구개발내용,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

## ② 향후 연구사업 관리

※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은 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」에 따라 운영

### 1) 연차·단계·최종보고서 제출

○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·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의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

- 연차보고서: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
- 단계보고서: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\*

\* 단계평가 이후 단계보고서가 수정·보완되는 날짜를 뜻하며, 단계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한 날까지 단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- 최종보고서: 연구개발과제 협약 종료일 후 60일

### 2) 단계평가

○ 단계평가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을 부여

※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하며 연구개발과제 중단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

※ 평가 등급에 따라 연구개발비 조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

○ 게재 논문 및 특허 등 연구성과는 지원과제와 연관되어 보건복지부 암정복 추진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에만 연구개발성과로 인정

○ 전문기관은 필요시 단계평가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소명자료 등 추가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#### [참고] 단계평가 평가기준표

| 평가부문           |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 평가방법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
| 목표달성도          | ·당초 연구계획에 비하여 연구목표는 얼마나 달성되었나?        | 20  | 정량   |
| 연구과정 및 성과의 우수성 | ·연구의 수행 내용과 과정이 적절한가?                 | 25  | 정성   |
|                | ·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가?(질적 수준, 성과 우수성, 기여도 등) | 25  | "    |
| 다음단계 진입여부      | ·향후 연구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?           | 20  | "    |
|                | ·연구 성과의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계획은 적절한가?       | 10  | "    |
| 합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     |

### 3) 최종평가

○ 최종평가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을 부여

※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하며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

○ 게재 논문 및 특허 등 연구성과는 지원과제와 연관되어 보건복지부 암정복 추진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에만 연구개발성으로 인정

○ 최종보고서 공개/비공개 여부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

#### [참고] 최종평가 평가기준표

| 평가부문           |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| 평가방법 |
|----------------|--|----|------|
| 목표달성도          | · 당초 연구계획에 비하여 연구목표는 얼마나 달성되었나?        | 20 | 정량   |
| 연구과정 및 성과의 우수성 | · 연구의 수행 내용과 과정이 적절한가?                 | 25 | 정성   |
|                | ·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가?(질적 수준, 성과 우수성, 기여도 등) | 20 | "    |
|                | · 연구 성과의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?           | 20 | "    |
| 결과활용 및 확산 우수성  | · 향후 연구 결과를 관리하고 활용할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? | 15 | "    |
| 합계             |  |    | 100  |

### 4) 특별평가

○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목표,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

### ③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

-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주관/공동/위탁과제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집행증빙서류 사본을 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함
-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연구과제별 집행잔액, 미사용 발생이자 및 연구비 기준 외 집행액 등 정산잔액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
- 기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따름

#### 4 연구성과 및 보안관리

##### 1) 연구개발성과의 소유·관리

-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연구개발성과의 유형,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
 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,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함
 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,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,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
  -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,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



##### 2) 연구개발성과 활용 현황 보고

-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전문기관의 장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7조제5항에 따라, 연구개발성과 관리를 위하여 연구종료 후 최장 5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##### 3) 연구개발성과의 과제정보 명기 및 성과정보 등록

-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, 홍보 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과

필히 사전 협의하여야 함

- 특히,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출원(등록)할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함

**<논문>**

- 국문: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(전문기관에서 부여한 과제번호, 예: RS-2026-000000)
- 영문: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&D Program for Cancer Control through the National Cancer Center(NCC)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& Welfare, Republic of Korea(전문기관에서 부여한 과제번호, 예: RS-2026-000000)

**<특허>**

- 관련법규\*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, 해당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정보\*\*를 기입
  - \* 관련법규 :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(특허출원서 등)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
  - \*\* 과제정보 기재항목 :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, 과제고유번호, 과제번호, 부처명, 과제관리(전문)기관명, 연구사업명, 연구과제명, 과제수행기관명, 연구기간

※ 연구개발성과는 지원과제와 관련된 것으로,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인정함

- 연구종료 전·후 연구책임자는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(논문게재, 특허 출원·등록 및 기술이전 내역)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제관리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수시 입력함

#### 4)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

-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「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」에 의거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·운영하고,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체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및 위반 시 조치하여야 함
- 보안관리 조치 및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. 다만,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

## 5 기술료 제도 안내

### ○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### ○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및 기준

- 납부대상 :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\*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

\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, 상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

#### - 납부기준

- ① 제3자 실시의 경우,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
- ② 직접 실시의 경우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

※ 정부납부기술료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에 따라 하기와 같이 적용

| 분류     |         | 부과기준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기술료율 | 기술료 납부 상한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3자 실시 | 중소기업    |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|              | 5%  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 |
|        | 중견기업    |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|              | 10% 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 |
|        | 대기업·공기업 |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|              | 20% 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 |
| 직접 실시  | 중소기업    |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    | 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 | 5%  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 |
|        | 중견기업    |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    | 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 | 10% 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 |
|        | 대기업·공기업 |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    | 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 | 20% 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 |

\* 기술기여도는 기업과 전문기관 등 연구현장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, 추후 협약 당사자 모두가 협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 가능함

※ 기술기여도

- ‘수익(매출액)’ 기준에 따른 ‘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’ 과 ‘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 R&D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’ 을 고려하여 ‘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’
-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을 중앙행정기관(전문기관)으로 납부할 경우에 한해 적용됨
-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는 납부액 산정 시 과제 종료 후 정산·환수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

○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기간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-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

## ⑥ 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 기타

### 1) 협약변경

-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
  - 다만, 연구책임자의 사망, 이민, 퇴직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,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
    - ※ 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,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
- 연구개발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
  - 단,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가능
- 기타 협약변경 절차 및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」에 따름

### 2) 기타

- 국립암센터 내부 연구자들과의 상호보완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정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국립암센터 내부 연구자들을 상대로 과제 설명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해야 함
  - ※ 반대로 연구책임자가 국립암센터에 국립암센터 내부연구자와의 정보교류를 위한 설명회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임

※ 본 계획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연구사업의 운영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」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함

### 문의처

#### ○ 암정복추진기획단사무국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TEL          | e-mail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 공고, 평가           | 031-920-1083 | kimhjung@ncc.re.kr |
| 과제 관리, 협약변경, 시스템 관련 | 031-920-1085 | yjin@ncc.re.kr     |
| 연구개발비               | 031-920-1082 | csh@ncc.re.kr      |
| 연구성과                | 031-920-1084 | chj@ncc.re.kr      |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<https://www.iris.go.kr>, 1877-2041

붙임. 제안요청서(RFP)

**1 202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공모과제 제안요청서**

|   |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<b>프로그램명</b>  | ‘암관리 근거 창출 연구’  |  | <b>보안과제 여부 (보안등급)</b>     | 일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공모유형</b>   | 자유공모/품목지정공모   |  | <b>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여부</b>    | ○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적용대상 가점</b>  | 해당사항 없음   |  | <b>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</b> | X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규모 및 기간</b>  | <b>지원분야</b>   | <b>지원기간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연구비 (연간)</b>           | <b>협약 형태</b> | <b>공모유형</b>     | <b>선정예정 과제수</b> |
|   | 암 예방·관리연구 분야  | 2026. 4. 1.~<br>2027. 12. 31.<br>(2년 이내) | 최대<br>150백만원              | 다년도          | 자유공모/<br>품목지정공모 | 4과제             |
| ※ 1차년도(* 26년)는 연간 연구비의 3/4 이내 지원<br>※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암정복추진기획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<br>※ 다년도 협약이 원칙이나,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및 연구비 변동 가능                    |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▶ 지원목적</b><br>○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암예방 및 관리 전략을 개발하고, 암 발생률·사망률 감소, 국민 삶의 질 향상,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지원<br>○ 국가 암관리 종합계획상의 주요 추진전략 관련 근거 마련 연구 |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▶ 주요 연구개발내용</b><br>○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의 근거 창출 연구로 아래 연구주제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<br>- 각 연구주제별 세부 연구개발 내용은 [붙임] 참고   |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구분</b>   | <b>연구주제</b>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공모유형</b>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1-1   | 국가 암관리 종합계획상의 주요 추진전략 관련 근거 마련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유공모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1-2   | 국가암관리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목지정공모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1-3   | 지속 가능한 소아청소년암 진료 및 생존자 지원체계 고도화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목지정공모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1-4   |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현황 분석과 국제 동향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체계 마련 연구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목지정공모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▶ 신청자격요건</b><br>○ 주관연구기관은 국내 산·학·연·병 가능<br>○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‘신청요건’ 부분 참고  |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▶ 특기사항

○ 국립암센터 공익적암연구사업(intramural program)과 상호연계하여 연구 추진

| 구분  | 공익적암연구사업(Intramural)               |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(Extramural)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암관리 | 근거탐색 및 평가연구, 사업모니터링, 사업평가, 제도개선 연구 | 빅데이터 등 활용한 신기술 개발, 기초연구, 정책 아이디어 도출, 사업고도화 |

○ 연구과제 수행 시 진행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, 국립암센터와 정기적으로 협의

- 필요시 착수보고회 및 중간점검회의, 종료보고회 개최 가능
- 연구진행 내용이나 결과를 바탕으로 암정복포럼 개최 협의 가능

○ 예비 선정된 신규과제 또는 단계별 평가 시, 가용 예산과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연구비 삭감이나, 세부과제 구성 변경 등의 조정 가능

\* (예시) 암예방·진단·치료·관리 분야의 새로운 정책대안 등 제시

○ 연구개발계획서 내 TRL(기술성숙도) 작성(착수시점 기준, 종료시점 목표)

▶ 선정평가 기준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| 평가내용  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연구의 부합성             | · 연구제안서(RFP)와의 부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연구목표의 타당성           | ·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등                 | 20 |
| 연구계획의 우수성           | · 연구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                    | ·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               | 10 |
|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의 적절성 | · 연구기간 및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절성,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| 20 |
| 기대효과 등              | · 연구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**붙임**

**연구주제별 세부 연구개발 내용**

|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<b>연구주제</b>   | 1-1. 국가 암관리 종합계획상의 주요 추진전략 관련 근거 마련 연구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규모 및 기간</b>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기간</b>   | <b>연구비(연간)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협약형태</b> | <b>공모유형</b> | <b>선정예정 과제수</b> |
| 2026. 4. 1. ~ 2027. 12. 31.<br>(2년 이내)  | 최대 150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년도         | 자유공모        | 1과제             |
| ※ 1차년도(* 26년)는 연간 연구비의 3/4 이내 지원<br>※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암정복추진기획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<br>※ 다년도 협약이 원칙이나,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및 연구비 변동 가능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목적</b>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○ 국가 암관리 종합계획상의 주요 추진전략 관련 근거 마련 연구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주요 연구개발 내용</b>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○ 국가 차원의 중장기 암관리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암관리사업의 근거 창출 연구<br>○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(2021~2025),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(2026~2030)*, 또는 제2차 호스피스·연명의료 종합계획(2024~2028)상의 주요 추진전략(안)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,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<br>*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상의 주요 추진전략(안)은 1월 중 재공지 예정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성과목표</b>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○ <b>(논문)</b> 과제책임자(총괄주관, 주관, 공동)가 주저자(교신, 제1)로 SCI(E)급 학술지에 연구종료 시까지 1편 이상의 논문 발표(accept)<br>* 편수는 사사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반영하며 연구개시 6개월 이후 발표된 논문에 한함<br>*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사사한 논문만 인정함<br>○ <b>(정책)</b> 국가 암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정부정책에 반영 가능한 정책제언 2건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<b>연구주제</b>   | 1-2. 국가암관리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 연구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규모 및 기간</b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기간</b>   | <b>연구비(연간)</b>                | <b>협약형태</b> | <b>공모유형</b> | <b>선정예정 과제수</b> |
| 2026. 4. 1. ~ 2027. 12. 31.<br>(2년 이내)  | 최대 150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| 다년도         | 품목지정공모      | 1과제             |
| <p>※ 1차년도('26년)는 연간 연구비의 3/4 이내 지원</p> <p>※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암정복추진기획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</p> <p>※ 다년도 협약이 원칙이나,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및 연구비 변동 가능</p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목적</b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○ 국가암관리 정책을 통해 암 조기 발견 및 5년 상대생존율 향상 등 투입 대비 경제적 관점에서 편익을 분석하여 지속적 정책 추진의 근거 확보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주요 연구개발 내용</b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p>○ (주요내용)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경제성 분석은 투입 비용과 산출되는 효과를 비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용최소화분석, 비용효과분석, 비용효용분석, 비용편익분석 등이 있음</li> </ul> </li> <li>■ 비용편익분석(CBA, Cost benefit analysis)은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·비교하며 단독 대안 평가 가능, 전통적으로 공공사업 분석(예비타당성 조사 등)에서 활용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건 의료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파악을 위해서도 활용</li> <li>* (2023) A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경제성 평가 연구. 한국건강증진개발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</li> <li>* (2021) Ananthapavan J, et al. A cost-benefit analysis framework for prevention health intervention to aid decision-making in Australian governments. <i>Health research policy and system.</i></li> </ul> </li> <li>■ 비용과 편익을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분석의 관점이 존재하며, 최근에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사회적 관점의 경제성 분석이 다수 진행되고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2020) Broeks MJ, et al. A social cost-benefit analysis of meat taxation and a fruit and vegetables subsidy for a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consumption in the Netherlands. <i>BMC public health.</i></li> </ul> </li> <li>■ 경제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 설계 → 비용과 성과 측정 → 시간 보정 → 불확실성 평가 → 의사결정</li> </ul> </li> </ul> <p>○ (세부 내용) 분석 대상 범위 설정, 비용편익분석 수행, 정책적 함의 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분석 대상 범위 설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을 수행할 국가암검진사업 범위의 설정</li> <li>* 암전주기(Cancer care continuum) 측면에서 암검진은 검진 이후 단계인 진단, 치료, 생존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의 효과 범위(조기진단(stage-shift), 사망률 감소 등)에 대한 설정과 검진 암종별 고려 범위에 대한 결정 필요</li> <li>*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(암검진, 경제성평가분야 등) 논의·자문 기반 범위 설정</li> </ul> </li> </ul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-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수행을 위한 비용과 편익의 범위 설정(안)

| 구분     | 내용   |
|--------|--|
| 분석 방법  | ○ 비용편익분석 (CBA)   |
| 분석 관점  | ○ 정부관점, 사회적 관점   |
| 분석 기간  | ○ 검진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 설정<br>ex) 전국민 국가암검진사업 실시('02) ~ 현재 또는 검진 연령 및 주기 일원화('11) ~ 현재<br>○ 기간을 다르게 조정하여 민감도 분석 수행 (1년 단위, 최근 10년 등)   |
| 투입 비용  | ○ (정부관점) 국가암검진사업에 소요된 예산<br>○ (사회적관점) 이동 비용, 시간 비용/ 생명연장으로 인한 의료비 등  |
| 편익     | ○ 분석 관점을 고려하여 편익 범위와 화폐화 요소 설정 필요<br>- 암검진사업을 통해 발생한 편익 (직접 편익, 간접편익)<br>*직접편익: 조기발견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편익, 생존율 향상으로 인한 생명연장 편익 등<br>*간접편익: 생산성손실 절감 편익 등<br>- 각 편익을 화폐화 하기 위한 요소 평균 임금 등 |
| 시간 보정  | ○ 효과 및 비용이 한 시점에 완료되지 않고 여러 기간을 거쳐 발생하므로, 동일 시점으로 환산 필요<br>- 보건의료 물가, 사회적 할인율 등을 적용<br>- 시간보정을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민감도 분석 수행 필요  |
| 민감도 분석 | ○ 자료의 부재 등 불확실성 발생의 여지가 있을 경우 수행<br>- 분석 기간, 시간보정, 편익 설정 범위 등 적용 가능  |

■ 비용편익분석 수행

- 정부 관점 및 사회적 관점에서 설정한 비용, 편익으로 결과 산출

\*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편익비용비율과 순편익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결과 산출 및 판단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편익-비용 크기 비교                   | Benefit (B) > Cost (C)        |
| 순편익 (Net benefit)             | NB= Benefit - Cost > 0        |
| 편익-비용 비율 (Benefit-Cost ratio) | BC ratio = Benefit / Cost > 1 |
| 순현재가치 (Net present value)     | NPV = PV(B-C) > 0             |
| 내부수익률 (IRR)                   | IRR > r (기준수익률)               |

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암검진사업의 경제성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제언

**성과목표**

▶ 정량적 목표

○ (논문) 과제책임자(총괄주관, 주관, 공동)가 주저자(교신, 제1)로 SCI(E)급 학술지에 연구종료 시까지 1편 이상의 논문 발표(accept)

\* 편수는 사사수로 나는 평균값으로 반영하며 연구개시 6개월 이후 발표된 논문에 한함

\*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사사한 논문만 인정함

○ 국가암검진사업 사회경제적 편익 연구 결과 보고서 1건

○ 유관기관 대상 연구 결과 발표 1회 이상

○ 암관리종합계획 등 정부정책에 반영 가능한 정책제언 1건 이상

▶ 정성적 목표

○ 암관리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틀(체계) 구축

|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<b>연구주제</b>   | <b>1-3. 지속 가능한 소아청소년암 진료 및 생존자 지원체계 고도화 연구</b>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규모 및 기간</b>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기간</b>   | <b>연구비(연간)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협약형태</b> | <b>공모유형</b> | <b>선정예정 과제수</b> |
| 2026. 4. 1. ~ 2027. 12. 31.<br>(2년 이내)  | 최대 150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년도         | 품목지정공모      | 1과제             |
| <p>※ 1차년도(* 26년)는 연간 연구비의 3/4 이내 지원</p> <p>※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암정복추진기획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</p> <p>※ 다년도 협약이 원칙이나,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및 연구비 변동 가능</p>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목적</b>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사업의 효과성 및 개선 방향 도출</li> <li>○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암치료 후 연계, 운영고도화 및 확대 방안 마련</li> <li>○ 진료-생존자 관리 연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발전 전략 제시</li> </ul>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주요 연구개발 내용</b>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성과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진료 실적(치료건수, 치료완료율), 치료 접근성(이동 거리, 대기시간), 만족도 등 지표 개발 및 분석</li> <li>- 권역별 진료모형 유형(거점기관형, 지역개방형, 타지역지원형)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</li> </ul> </li> <li>○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발전 방안 제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진료모형 최적화 및 수가제도 개선 방향 제시</li> <li>- 권역별 인력 배치, 시설·장비 지원체계 고도화</li> <li>-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 제시(단기-중기-장기 전략 구분)</li> </ul> </li> <li>○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고도화 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암치료 후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연계 전달체계 구축</li> <li>-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고도화 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서비스 확보 및 질관리 방안, 전문가 양성, 평가체계, 지역사회 지원연계, 학교복귀 전략 수립 방안 등</li> </ul> </li> <li>-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확대 방안 제시</li> </ul> </li> <li>○ 암 진단·치료·장기추적 관리·성인기 전환기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 및 플랫폼(진단부터 전주기 등록 및 건강 관리·예측 등) 기반 구축 방안 제안</li> </ul>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성과목표</b>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논문)</b> 과제책임자(총괄주관, 주관, 공동)가 주저자(교신, 제1)로 SCI(E)급 학술지에 연구종료 시까지 2편 이상의 논문 발표(accept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편수는 사사수로 논문 평균값으로 반영하며 연구개시 6개월 이후 발표된 논문에 한함</li> <li>*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사사한 논문만 인정함</li> </ul> </li> <li>○ <b>(정책)</b>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대해 정부정책에 반영 가능한 정책제언 2건 이상</li> <li>○ <b>(기타)</b>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및 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통합 운영모델 제시</li> </ul>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|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<b>연구주제</b>  | 1-4.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현황 분석과 국제 동향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체계 마련 연구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규모 및 기간</b>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기간</b>  | <b>연구비(연간)</b>   | <b>협약형태</b> | <b>공모유형</b> | <b>선정예정 과제수</b> |
| 2026. 4. 1. ~ 2027. 12. 31.<br>(2년 이내)   | 최대 150백만원  | 다년도         | 품목지정공모      | 1과제             |
| ※ 1차년도(* 26년)는 연간 연구비의 3/4 이내 지원<br>※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암정복추진기획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<br>※ 다년도 협약이 원칙이나,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및 연구비 변동 가능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지원목적</b>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○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현황과 미비점을 진단하고, 국제 비교와 질 지표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 마련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주요 연구개발 내용</b>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○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제도적 개선 필요 도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조사</li> <li>-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현황, 의료진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식 및 장애요인 조사</li> </ul> ○ 국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 정책 및 제도 비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외 주요 국가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현황, 지원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문헌고찰 수행</li> <li>- 국내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보호자 지원 정책 및 제도 비교</li> <li>-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환자 보호자를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한 로드맵 마련</li> </ul> ○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지표 조사 및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의 대상자, 제공기관,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단기적, 장기적 질 지표 조사 및 활용 제언</li> </ul> ○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의 미충족 요구 조사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 도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경험 및 미충족 요구 조사</li> <li>-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식 및 장애요인 조사</li> <li>-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 도출</li> </ul>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<b>성과목표</b>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○ <b>(논문)</b> 과제책임자(총괄주관, 주관, 공동)가 주저자(교신, 제1)로 SCI(E)급 학술지에 연구종료 시까지 1편 이상의 논문 발표(accept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편수는 사사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반영하며 연구개시 6개월 이후 발표된 논문에 한함</li> <li>*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사사한 논문만 인정함</li> </ul> ○ <b>(정책)</b>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정책에 반영 가능한 정책제언 2건 이상   |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## 2

# 202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공모과제 제안요청서

|   |  |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|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프로그램명   | ‘공익적 암 임상연구’   |   |              | 보안과제 여부<br>(보안등급)        | 일반         |             |
| 공모유형  | 품목지정공모   |   |              | 정부납부기술료<br>납부 대상여부       | ○          |             |
| 적용대상<br>가점  | ○  |   |              | 연구데이터<br>관리계획<br>제출대상 여부 | ○          |             |
| 지원규모<br>및 기간  | 지원분야   | 지원기간  | 연구비<br>(연간)  | 협약<br>형태                 | 공모유형       | 선정예정<br>과제수 |
|   | 한국형 암 임상연구 네트워크<br>(Korea Clinical Oncology Network) | 2026. 4. 1.~<br>2030. 12. 31.<br>(5년 이내,<br>2단계(2년+3년)) | 최대<br>500백만원 | 다년도                      | 품목지정<br>공모 | 1과제         |
| ※ 1차년도(* 26년)는 연간 연구비의 3/4 이내 지원<br>※ 단계평가 후 과제 진척정도에 따라 과제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<br>※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암정복추진기획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<br>※ 다년도 협약이 원칙이나,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및 연구비 변동 가능 |  |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

### ▶ 연구목표

- 학술적, 공익성의 추구, 혁신적인 신약과 새로운 치료법의 확립, 신의료기술 등의 개발을 통한 국민의 치료권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연구자주도 임상연구(II: Investigator-Initiated Trials)\* 활성화
- 산업체와의 이해 관계가 없는 공익적 목적의 다기관 암 임상연구 추진을 통해 암환자에게 최적의 예방·진단·치료·예후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창출
- 암예방·치료기술의 개선이나 적응증 확대 연구 또는 암 임상라이브러리와 암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근거 생성(RWE)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영역별 임상연구 그룹 지원

### ▶ 주요 연구개발내용

※ 연구사업 지원범위: 보건의료현장에서 통용되는 의료기술 임상연구(중개연구 분류 T3 및 T4)



#### 1) 공익적 목적의 다기관 암 임상연구 수행

-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, 국가 진료 표준 확립, 신약개발 기반 확보 등 다방면의 공익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과학적 임상 근거 창출
  - \* (예) 복강경위절제술에 대한 국내 위암 수술의 표준 확립 등
- 진료현장의 미충족 수요에 부응하는 암예방·진단·치료기술 개발
  - \* (예) 기존 암 검진법 개선 및 암 조기발견을 위한 새로운 감시검사법 등 개발
- 수술/항암/방사선 등이 결합된 병용치료법 개발 등 현재 활용되고 있는 암예방·치료기술의 개선 연구
- 기허가 임상시험 결과가 소외된 암환자에서도 재현되는지를 검증하는 실용(pragmatic) 임상시험
  - \* (예) 소아암, 희귀·난치암 등을 대상으로 항암신약의 적응증 확대 연구

○ **희귀난치암종\* 연구 우대**

\* 구강·인두암, 뇌·중추신경계암, 골근육종, 안종양, 식도암, 소아암 등 발생률이 낮고 치료가 어렵거나 완치가 힘든 암

2) **임상연구의 질관리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**

- 임상시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임상연구의 질 향상 도모
- 국내 다기관 협력 및 연구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
- 해외 임상연구그룹과의 연계 협력 구축 및 국제 공동연구 기반 확보

▶ **신청자격 요건**

○ **다기관 임상연구 그룹(학회, 연구회 등)**

-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, 암예방·진단·치료를 연구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(법인)
- 과제 단위가 아닌 연속성 있는 연구를 위한 국가/연구회 기반 데이터센터\* 등 지속 가능한 연구 인프라가 구축(예정)된 연구 그룹
  - \* 환자 등록, 장기 추적, 데이터 분석까지 통합 수행 가능 필요
- 기존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다기관 임상연구 그룹은 선정 우선순위 낮음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‘신청요건’ 부분 참고
- \* 다기관 임상연구 그룹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, 연구회장(학회장)의 원 소속 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. 다만, 과제 수행기간 중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등에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

○ **지역암센터 소속 기관의 연구 참여시 우대(1과제당 가점 0.5점/ 참여기관수와 무관)**

▶ **성과목표**

○ **주요 연구개발내용별 단계별 요구성과**

| 주요 연구개발내용 | 단계별 요구성과   |
|-----------|--|
| 임상연구 수행   | 1단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SCIE 논문 2편 게재(JCR 분야별 상위 10% 이내)*</li> <li>- 전국 주요 병원, 연구기관, 전문 학회(연구회) 간 연계를 통한 대규모 임상 데이터 구축(30%)</li> <li>- 기존 치료법의 적응증 확대, 신기술·신치료의 비용효과성 검증 등 실제 암 치료의 근거 기반 마련</li> </ul>           |
|           | 2단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SCIE 논문 6편 게재(JCR 분야별 상위 10% 이내)*</li> <li>- 임상데이터 구축 100%</li> <li>- 기존 치료법의 적응증 확대, 신기술·신치료의 비용효과성 검증 등의 분야별 암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에 근거를 주는 임상 연구 논문 SCIE 논문 1편 게재 (JCR 분야별 상위 5% 이내)</li> </ul> |
| 국내외 협력    | 1단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 1회 이상 국내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</li> <li>- 연 1회 이상 해외 임상시험그룹과의 정보교류회를 통한 국제 공동 연구 협의</li> <li>- 국제 공동 연구 MOU 1건 이상</li> </ul>   |
|           | 2단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 1회 이상 국내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</li> <li>- 연 1회 이상 해외 임상시험6그룹과의 정보교류회</li> <li>-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임상 연구 논문 1편 게재(SCIE, JCR 분야별 상위 5% 이내)*</li> </ul>   |

\* 논문 성과의 경우,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사소한 논문만 인정함

▶ 특기사항

- 과제계획서 제출 시 필수 제출 서류
    - \* 주관연구개발기관의 IRB 접수확인서나 승인서 및 관련 첨부 서류(프로토콜, 증례기록지, 환자동의서 등)
    - \* 시험약이 필요한 경우: 제약사의 제공 약약서 등 증빙 서류
  - 임상시험계획 승인서(Investigational New Drug, IND) 제출(해당시)
  - 연구개발계획서 내 TRL(기술성숙도) 작성(착수시점 기준, 종료시점 목표)
  - 임상연구 데이터의 질 관리 체계 구축
    - 임상연구 데이터는 검증된 eCRF를 이용하여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함
    - 수집된 모든 임상연구 데이터는 사업종료 후 국가암데이터센터를 통해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를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구득하여야 함
- [제출자료]

  - 수집된 자료(Raw data) 등
  - 유전체 데이터(수집시) 및 의료영상 데이터 포함
  - 연구정보의 제3자 제공 및 2차 연구 이용에 대한 동의서

\* 세부사항 문의: 국가암데이터센터 데이터구축팀 ☎ 031-920-1890
-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시 단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시점,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
  - 연구개발결과는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하여,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,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음
    - 특히, 환자등록 건수 축소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, 부득이한 경우 축소 시 연구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  - 예비 선정 과제는 가용 예산과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연구비 삭감 등의 조정을 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유사 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묶어 새로운 대형과제를 제안할 수 있음
  - 연구비 비목 계상
    - 간접비는 전체 연구비의 10% 이내에서 계상

▶ 선정평가 기준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| 평가내용  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연구의 부합성             | · 연구제안서(RFP)와의 부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연구목표의 타당성           | ·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등                 | 20 |
| 연구계획의 우수성           | · 연구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                    | ·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               | 10 |
|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의 적절성 | · 연구기간 및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절성,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| 20 |
| 기대효과 등              | · 연구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(지역암센터 우대 가점 등)